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76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이달희 · 강선영 · 서천호  
김종양 · 유용원 · 박형수  
김위상 · 박충권 · 김예지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와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4조의2제2항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16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한 범칙금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u>&lt;신설&gt;</u></p>	<p>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경찰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u></p>
<p>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생략)  <u>&lt;신설&gt;</u></p>	<p>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한 범칙금 수입액의 100분의 5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u></p>